

보도자료

2013년 7월 18일(목) 14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(☎2110-1530)
통신시장조사과 문홍원 사무관(☎2110-1534) mhwons@kcc.go.kr

방통위, 이동통신 3사(SK텔레콤·KT·LG유플러스)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

- 이통 3사에 과징금 669.6억원,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 부과 -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경재)는 '13.7.18.(목) 전체회의를 개최하여,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.6억원, KT 202.4억원, LGU+ 102.6억원 등 총 669.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.
- 이번 제재는 '13.1.8~3.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'13.4.22~5.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.
-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('13.1.8~3.13일) 중에 위법성 판단 기준(27만원)을 초과한 비율은 71.9%이고, 사업자별로는 SKT 73.8%, KT 73.1%, LGU+ 66.0%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*을 보였다. 또한,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.7만원이고, 사업자별로는 KT 43.6만원, SKT 42만원, LGU+ 38.1만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.

* 과거 위반율 : '10년 47.9%, '11년 41.8%, '12년 43.9%, '13.3월 48.0%

□ 과열기간('13.4.22~5.7일)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(27만원)을 초과한 비율이 51%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.6%, LGU+ 48.8%, SKT 48.5%였다. 또한,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.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.6만원, SKT 29.7만원, LGU+ 27.8만원이었다.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('13.1.8~3.13일)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.

□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(71.9%↔51%)과 보조금 수준(41.7만원↔30.3만원)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였다. 특히,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규모집 금지기간('13.1.8~3.13일)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과열기간('13.4.22~5.7일)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였다.

□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.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, 위원회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('13.4.22~5.7일)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별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, LGU+ 52점,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하였다.

※ 6가지 별점산정 지표 : 전체위반율, 위반율 높은 일수, 번호이동 위반율, 전체 평균보조금, 위반 평균보조금, 자료 불일치 정도

□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단말기 보조금 조사 개요

< 조사 배경 >

- 방송통신위원회는 '13.1.8~3.13일과 '13.4.22~5.7일 기간 중 SKT, KT 및 LGU+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(27만원)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'13.5.8일부터 조사 실시

< 조사 결과 >

【 '13.1.8~3.13일 신규모집 금지기간 】

- (조사대상)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수 3,908,136건 중 247,000건(6.3%)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·분석
- (위반사항)
 - 위법성 판단기준(27만원)을 초과한 비율은 SKT 73.8%, KT 73.1% LGU+ 66.0%라는 사실을 확인

< 위반율 현황 >

구 분	번호이동(MNP)	기기변경	신규(010)	전체
SKT	76.3%	74.9%	66.6%	73.8%
KT	78.6%	69.2%	49.6%	73.1%
LGU+	65.7%	70.0%	57.3%	66.0%
평균	74.1%	72.1%	62.2%	71.9%

- 이통 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**41.7만원**이고, 사업자별로는 **KT 43.6만원**, SKT 42만원, LGU+ 38.1만원으로 나타남

- 위법성 판단기준(27만원)을 초과한 보조금은 이통 3사 평균 **53.1만원**이고, 사업자별로는 **KT 54.6만원**, LGU+ 52.3만원, SKT 52.3만원으로 나타남

【 '13.4.22~5.7일 과열기간 】

- (조사대상)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수 1,003,606건 중 61,816건(6.2%)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·분석
- (위반사항)
 - 위법성 판단기준(27만원)을 초과한 비율은 **KT 55.6%**, LGU+ 48.8%, SKT 48.5%라는 사실을 확인

< 위반율 현황 >

구 분	번호이동(MNP)	기기변경	신규(010)	전체
SKT	57.8%	38.5%	44.3%	48.5%
KT	59.8%	52.2%	26.1%	55.6%
LGU+	48.5%	53.9%	38.3%	48.8%
평균	56.3%	46.5%	41.2%	51.0%

-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는 KT 8일, LGU+ 3일, SKT 2일로 나타남

< 일자별 위반율 현황 >

(단위 : %)

구 분	4.22	4.23	4.24	4.25	4.26	4.29	4.30	5.1	5.2	5.3	5.6	5.7	평균
SKT	62	62	46	48	36	41	47	29	35	33	53	59	48.5
KT	66	66	52	43	35	37	42	65	45	56	56	63	55.6
LGU+	57	52	46	44	40	41	53	34	38	38	53	59	48.8
평균	62	63	49	45	37	40	47	42	39	43	54	60	51.0

- 이통 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**30.3만원**이고, 사업자별로는 **KT 32.6만원**, SKT 29.7만원, LGU+ 27.8만원으로 나타남
- 위법성 판단기준(27만원)을 초과한 보조금은 이통 3사 평균 **48.8만원**이고, 사업자별로는 **KT 49.5만원**, SKT 48.8만원, LGU+ 47.2만원으로 나타남

-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한 결과,
 - 이통 3사 평균은 **26.6%**이고, 사업자별로는 **LGU+ 30.8%**, **KT 29.7%**, **SKT 22.0%**로 나타남

< 근거법령 및 위법성 판단 >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4] 5호 마목 1)은 “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”하는 행위를 금지

<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>

- ◆ **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**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5.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
- ◆ **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[별표 4] 5. 마.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**
 - 1)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, 번호,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(동법 제52조 제1항 각호) 및 과징금(동법 제53조의2)을 부과하기로 의결

<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>

① 시정명령

- (금지행위의 중지) 가입자(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)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지
- (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)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, 대리점에 SKT는 7일, KT는 10일, LGU+는 10일간 공표
- (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)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,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

② 과징금 부과 : 총 669.6억원

-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하여 기준 과징금을 결정하고, 여기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여 **SKT 364.6억원, KT 202.4억원, LGU+ 102.6억원**을 각각 부과

구 분	'13.1.8~3.13 (신규모집 금지기간)	'13.4.22~5.7 (과열기간)	합 계
SKT	337.4억원	27.2억원	364.6억원
KT	175.4억원	27.0억원	202.4억원
LGU+	91.6억원	11.0억원	102.6억원
합 계	604.4억원	65.2억원	669.6억원

③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: KT 7일

-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신규모집 금지를 추가하되,
 - 1개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조치가 처음인 점, 과징금도 병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 금지 7일 부과